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C26021901
평가금액	217,766,94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최병훈감정평가사사무소 / 최병훈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7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최병훈감정평가사사무소 / 최병훈	eyJhbGciOiJFUzI1Nils	2026-03-04 13:59: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건명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8-63 외 소재 물건 (2023-01844-A08)
감정서번호	C26021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병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최병훈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칠백칠십육만육천구백사십원정(₩217,766,94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순옥 (2023-01844-A08)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귀의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6.02.27	2026.02.27	2026.03.0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838.1555	토지	1,838.1555	-	217,766,940
		이	하	여	백	
	합계					₩217,766,9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 평가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별빛마을 전원주택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구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하며,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및 기타

1)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인 2026년02월27일로 하였음.

2) 본건은 2026년02월27일 현장을 답사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4) 본건 1,4)는 공유지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지분별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5) 본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는 주위 지형, 지물, 위성사진, 주위토지 이용상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 및 그에 따른 현실 이용상황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감정평가방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1) 관련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액을 산정하
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Ⅲ.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가. 대상토지 개요

번호	소재지 / 지번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개별공시지가 (2025.01.01.)
1	옥천면 용천리 산28-63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526 중 274.9287	8,160
2	옥천면 용천리 산28-72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1,210	8,160
3	옥천면 용천리 산28-73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106	8,160
4	옥천면 용천리 산28-89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473 중 247.2268	12,700

나.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지구 등의 공법상 제한,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6.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용천리 156-66	843	임야	토지 임야	보전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79,3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계산식
양평군 보전관리	2026.01.01. ~ 2026.02.27.	0.097	2026.01.01 ~ 2026.01.31 : 0.052 (1 + 0.00052) * (1 + 0.00052 * 27/31) ≒ 1.00097

3.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점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비교내용

번호	비교 표준지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4	A	-	0.75	0.90	-	1.00	1.00	0.675
		본건은 임도의 상태, 접근성, 경사 등 열세함.						
2	A	-	0.90	0.85	-	1.00	1.00	0.765
		본건은 접근성, 형상, 면적규모 등 열세함.						
3	A	-	0.90	0.70	-	1.00	1.00	0.630
		본건은 접근성, 형상 등 열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로 비준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 가격}}{\text{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 가격}}$$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인근지역 내 사례 및 비교사례의 선정

○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평가목적	사정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①	용천리 ***-**	임야	보전 관리	담보	147,000	2023.11.28	-
②	용천리 산***-**	임야	보전 관리	공매	169,000	2024.04.04	-
③	용천리 산***-**	임야	보전 관리	공매	122,000	2025.03.31	-

○ 거래사례

(자료출처 :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면적 (㎡)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비고
					거래단가(원/㎡)		
㉠	용천리 ***-**	임야	보전 관리	519	94,000,000	2025.02.03	-
					181,117		
㉡	용천리 산**-**외	임야	보전 관리	473	50,000,000	2024.06.03	2필지 지분거래
					105,708		
㉢	용천리 산**-**	임야	보전 관리	534	40,000,000	2024.06.03	-
					74,906		
㉣	용천리 산**-**	임야	보전 관리	1,016	146,000,000	2024.07.09	-
					143,700		

○ 비교사례의 선정

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③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표준지 A / 사례 ③

구분		기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산가액 (원/㎡)	격차율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122,000	1.00	1.00735	1.00	1.320	162,224	2.044
가격시점 표준지가격		79,300	-	1.00097	-	-	79,377	
사례기준 산정내역	사정 보정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됨.(1.00)						
	시점 수정	경기도 양평군 보전관리 지가변동률 (2025.03.31. ~ 2026.02.27.) : 1.00735						
	지역 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개별 요인	가로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	1.10	1.20	-	1.00	1.00	1.320
		표준지는 임도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 및 지세 등에서 우세함.						

4) 실거래 분석 등을 통한 검증

본건과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동일하고, 지목,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지역 내 토지의 거래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정된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 유사 토지의 적정 지가수준 등과 공시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타요인 비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사례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상향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와 같이 산정된 보정치를 참고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

(단위 : 원/㎡)

번호	표준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결정단가
	기호	공시지가						
1	A	79,300	1.00097	1.00	0.675	2.04	109,302	109,000
2	A	79,300	1.00097	1.00	0.765	2.04	123,876	124,000
3	A	79,300	1.00097	1.00	0.630	2.04	102,015	102,000
4	A	79,300	1.00097	1.00	0.675	2.04	109,302	109,000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실거래 신고된 인근지역 거래사례 중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제 개별요인에서 비교성이 높은 사례㉔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자료출처 :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면적 (㎡)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비고
					거래단가(원/㎡)		
㉔	용천리 1**-**	임야	보전 관리	519	94,000,000	2025.02.03	-
					181,117		

2. 사정보정

본 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사례로 인근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시점수정

구분	산정기간	변동률 (%)	계산식
㉠ (양평군 보전관리)	2025.02.03. ~ 2026.02.27.	0.856	2025.02.01 ~ 2025.02.28 : 0.071 2025.03.01 ~ 2025.03.31 : 0.056 2025.04.01 ~ 2025.04.30 : 0.077 2025.05.01 ~ 2025.05.31 : 0.057 2025.06.01 ~ 2025.06.30 : 0.078 2025.07.01 ~ 2025.07.31 : 0.088 2025.08.01 ~ 2025.08.31 : 0.061 2025.09.01 ~ 2025.09.30 : 0.076 2025.10.01 ~ 2025.10.31 : 0.063 2025.11.01 ~ 2025.11.30 : 0.051 2025.12.01 ~ 2025.12.31 : 0.082 2026.01.01 ~ 2026.01.31 : 0.052 $(1 + 0.00071 \times 26/28) \times (1 + 0.00056) \times (1 + 0.00077) \times (1 + 0.00057) \times (1 + 0.00078) \times (1 + 0.00088) \times (1 + 0.00061) \times (1 + 0.00076) \times (1 + 0.00063) \times (1 + 0.00051) \times (1 + 0.00082) \times (1 + 0.00052) \times (1 + 0.00052 \times 27/31) \div 1.00856$

4.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와 대상 토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 동일함.(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번호	비교 사례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4	㉠	-	0.75	0.85	-	1.00	1.00	0.638
		본건은 임도의 상태, 접근성, 경사 등 열세함.						
2	㉠	-	0.90	0.80	-	1.00	1.00	0.720
		본건은 접근성, 형상, 면적규모 등 열세함.						
3	㉠	-	0.90	0.65	-	1.00	1.00	0.585
		본건은 접근성, 형상 등 열세함.						

6.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

(단위 : 원/㎡)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결정단가
	기호	단가						
1	㉠	181,117	1.00	1.00856	1.00	0.638	116,542	117,000
2	㉠	181,117	1.00	1.00856	1.00	0.720	131,521	132,000
3	㉠	181,117	1.00	1.00856	1.00	0.585	106,860	108,000
4	㉠	181,117	1.00	1.00856	1.00	0.638	116,542	117,000

라. 시산가액 조정 관련 사항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사례 및 인근지가 등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며, 본건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인근의 사례와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 분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1	274.9287	109,000	29,967,220
2	1,210	124,000	150,040,000
3	106	102,000	10,812,000
4	247.2268	109,000	26,947,720
합 계	1,838.1555	-	217,766,94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8-63	임야	보전관리지역	1,210 526x---- 2,315	274.9287	109,000	29,967,220	송순옥지분
2	"	산28-72	임야	보전관리지역	1,210	1,210	124,000	150,040,000	
3	"	산28-73	임야	보전관리지역	106	106	102,000	10,812,000	
4	"	산28-89	임야	보전관리지역	1,210 473x---- 2,315	247.2268	109,000	26,947,720	송순옥지분
합 계								₩217,766,940.-	
				이	하	여	백		

토 지 평 가 요 항 표

번호(1~4)

Page : 1

- | | | |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2. 교통상황 | 3. 형태, 지세 |
| 4. 이용상황 | 5. 접면도로상황 |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
|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별빛마을 전원주택단지'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고 환경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불편함.

3,4. 형태, 지세 및 이용상황

번호(1,4) : 사다리형 급경사 내지 일부 완경사지로 자연림임.

번호(2,3) 부정형 완경사지 내지 일부 급경사지로 자연림임.

5. 접면도로상황

본건 (1~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번호(2,3)은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다만 사용권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호(1~4)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19)(일부제한구역220m(모든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7. 제시목록외의 물건

본건 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목조 아스팔트청글 정자 약 9㎡)이 소재함.

토 지 평 가 요 항 표

번호(1~4)

Page : 2

- | | | |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2. 교통상황 | 3. 형태,지세 |
| 4. 이용상황 | 5. 접면도로상황 |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
|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 |

8.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8-63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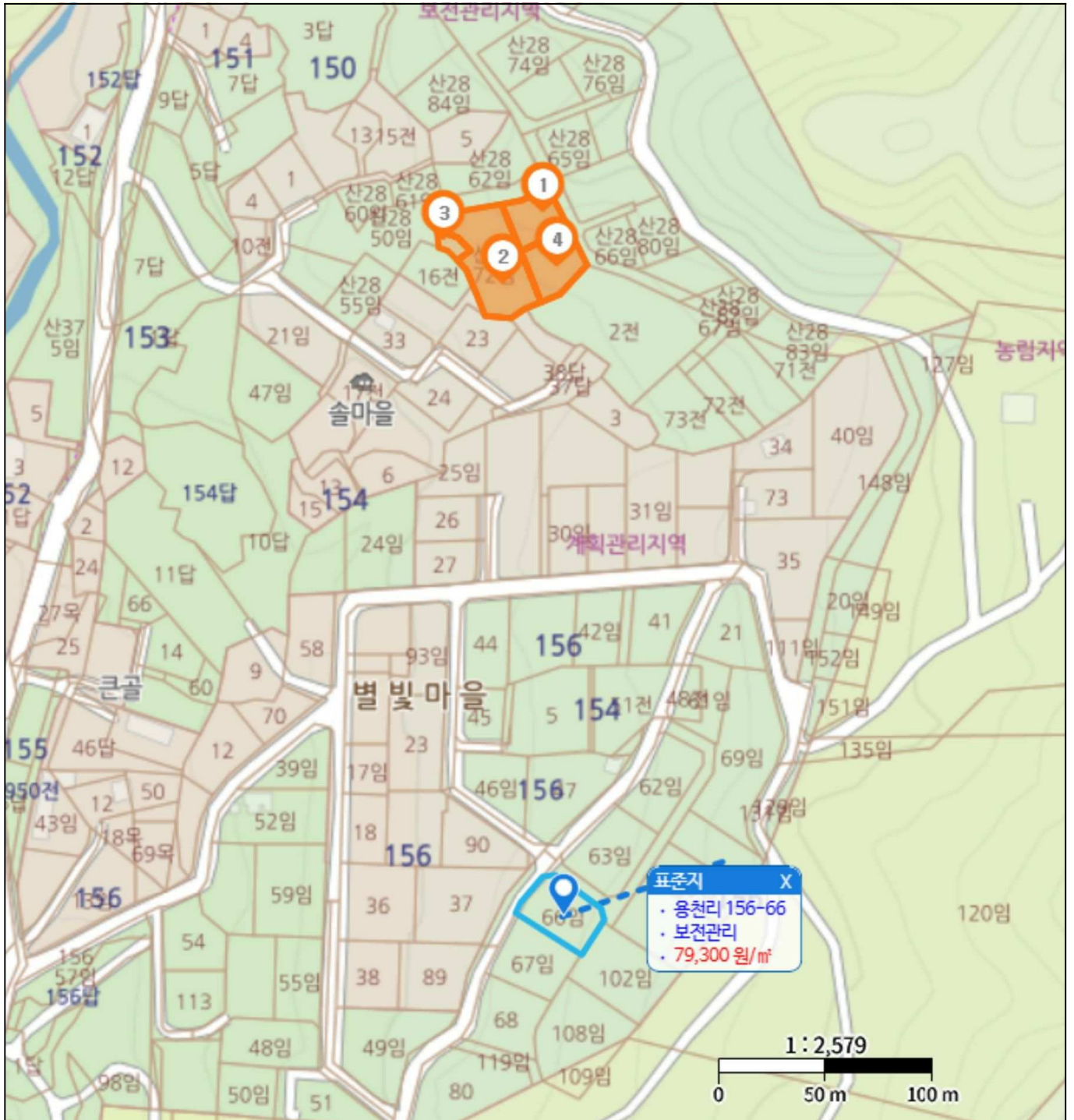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8-63외



지 적 도

NO SCALE



제시외 건물(목조 아스팔트싱글 정자 약 9m²)





